

이재민 임시조립주택 지원 설명회



영 덕 군
[도시디자인과]

이재민 임시조립주택 지원 설명회

1 조립주택 지원 근거

○ 관련근거

- 「재해구호법」 제4조의2
- 임시주거용 조립주택 운영지침

○ 조립주택 지원 원칙 : 세대별로 1동씩 지원(10평 정도)

○ 지원대상 :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에 따른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현상으로
주거시설에 피해를 입어 조립주택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(이재민)

2 조립주택 유형 및 설치개요

○ 임 시 형 : 최대 2년간 임대(무상) 후 반납하는 유형

○ 영 구 형 : 최대 2년간 임대(무상) 후 매입하는 유형

※ 추후 매입을 희망하고 본인 소유 토지에 설치하는 경우 25ton 트럭의 진출입에 장애가 없어야 가능함.

※ 본인 소유 토지가 아닌 경우, 본인이 토지소유자로부터 토지사용승낙 필요(임대료 본인 부담)

※ 매입금액(1,500만원~2,500만원 정도)은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따라 감정평가금액에 따름

○ 설치시기 : 5월말까지 설치예정

○ 설치우선순위 : ①군유집단 ⇒ ②마을단위 ⇒ ③개별단위

3 지원기간 및 유지관리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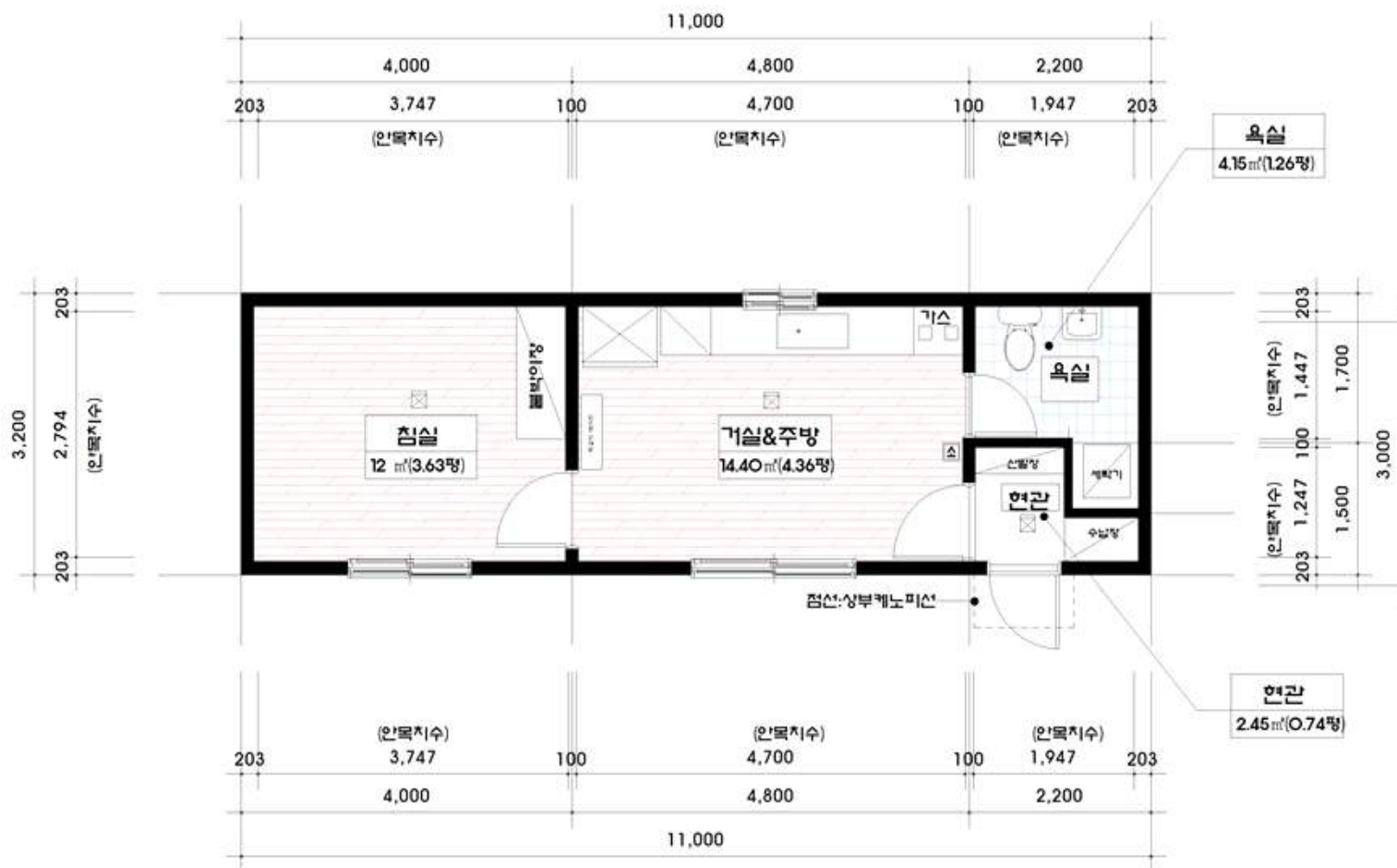
○ 지원기간

- 지원기간은 12개월 이내이며, 주택 복구 장기화 등으로 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 12개월 이내의 단위로 1회에 한해 연장신청을 하여야 함.(총24개월)
- 지원기간 중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
- 무단으로 퇴거한 경우
- 신청서의 복구계획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
-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거나 양도한 경우
- 지원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입주하게 된 경우

○ 입주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조립주택을 (변경)훼손한 경우 손해를 배상하여야 함.

4 평면도(안) 및 설치품목

1안



1층 평면도(1안)

A41/80

TYPE	1안
크기	3.2M X 11M
면적	35.2M2(약10.6평)

남부지역단열기준적용

벽 열관류율: 0.320 W/㎡ · K
 지붕 열관류율: 0.18 W/㎡ · K
 바닥 열관류율: 0.22 W/㎡ · K

창호:PVC이중창

열관류율: 1.8 W/㎡ · K 이하

현관문:단열방화문

열관류율: 1.8 W/㎡ · K 이하

설치품목

불박이장

싱크대, 기스렌지

대변기, 세면기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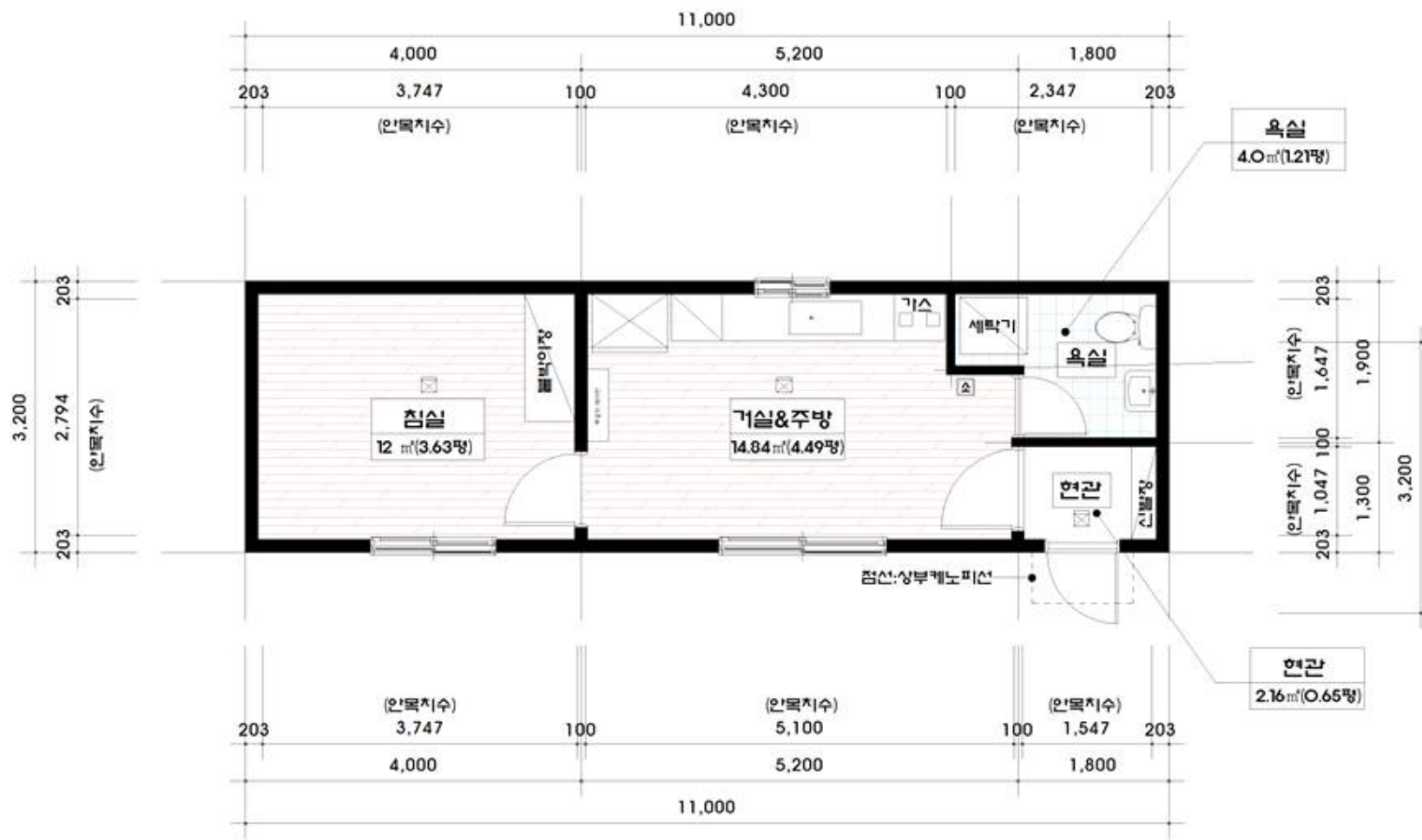
화장실 액세서리

도어록

온수기

소화기, 단독경보감지기

2인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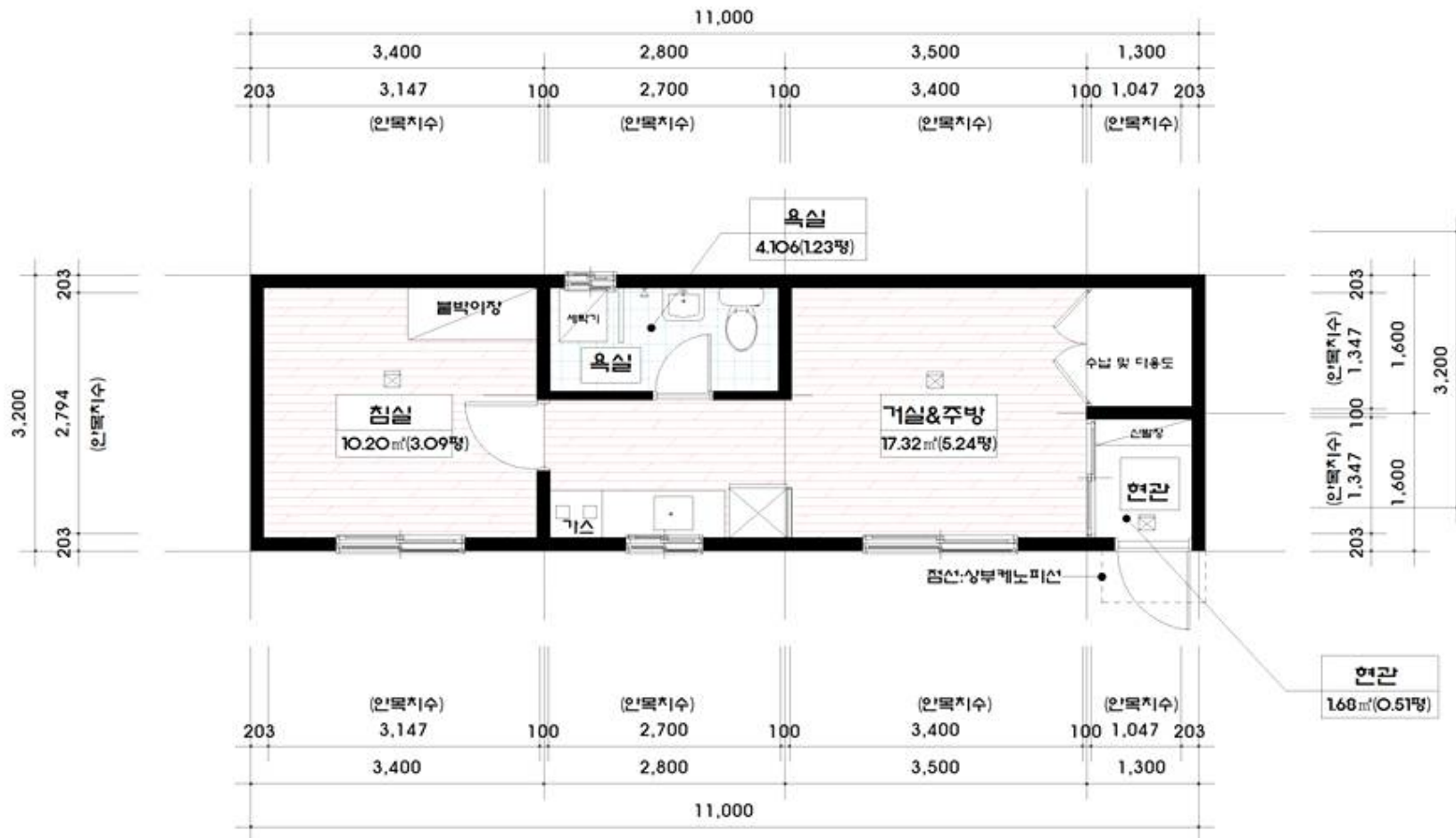
1층 평면도(2인)

TYPE	2인
크기	3.2M X 11M
면적	35.2M2(약10.6평)

남부지역단열기준적용
벽 열관류율: 0.320 W/㎡ · K
지붕 열관류율: 0.18 W/㎡ · K
바닥 열관류율: 0.22 W/㎡ · K
창호:PVC이중창
열관류율: 1.8 W/㎡ · K 이하
현관문:단열방화문
열관류율: 1.8 W/㎡ · K 이하

설치품목
불박이장
싱크대,가스렌지(하이리이트)
대변기,세면기
화장실 액세서리
도어록
온수기
소화기,단독경보감지기

3안



1층 평면도(3안)

TYPE	3안
크기	3.2M X 11M
면적	35.2M2(약10.6평)

남부지역단열기준적용	
벽	열관류율: 0.320 W/㎡ · K
지붕	열관류율: 0.18 W/㎡ · K
바닥	열관류율: 0.22 W/㎡ · K
창호:PVC이중창	
열관류율:	1.8 W/㎡ · K 이하
현관문:단열방화문	
열관류율:	1.8 W/㎡ · K 이하

실시품목
불박이장
싱크대,가스렌지(하이라이트)
대변기,세면기
화장실 액세서리
도어록
온수기
소화기,단독경보감지기